

# 퇴직금규정시행요강

제정 : 1992. 7. 7

1차개정 : 1999. 1. 1

2차개정 : 2001. 6 .8

3차개정 : 2010. 7. 1

4차개정 : 2016.12.22

5차개정 : 2019. 6.17

6차개정 : 2020. 9. 3

7차개정 : 2023. 2.16

8차개정 : 2024. 4.17

**제1조(목적)** 이 요강은 「퇴직금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갱신기간의 통산)** 고용계약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갱신되기 이전의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한다.

**제3조(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)**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할 때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**제4조(임금의 정의)**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할 때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으로 기본연봉, 직무연봉, 내부평가급, 정기상여금, 시간외근무수당, 자녀수당, 연차수당, 경평성과급을 포함한다.

**제5조(평균임금의 산정)** 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,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서식의 평균임금 산정서에 따른다.

②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금 항목에 따라 산입기간을 달리하여 산정한다.

1. 기본연봉, 직무연봉, 정기상여금, 시간외근무수당, 자녀수당 : 퇴직일 이전 3개월분
2. 내부평가급, 경평성과급, 연차수당 : 퇴직일 이전 12개월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

③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(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등 포함)은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특별퇴직금 산정)** 규정 제8조 및 제8조의2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또는 월평균임금의 45퍼센트 해당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
**제7조(서식)** 이 요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급여담당 부서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(제정)

이 요강은 1992. 7. 7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1)

이 요강은 1999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)

이 요강은 2001. 6.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3)

- ① (시행일) 이 요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1.6.30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필요한 경우, 개정전 임금항목을 현행 임금항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#### 부칙(4)

- ① (시행일)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7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필요한 경우, 이 요강 개정전 평균임금산정서를 함께 사용

할 수 있다.

#### 부칙(5)

이 요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6)

- ① (시행일) 이 요강은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임금의 정의) 및 제5조(평균임금의 산정)는 퇴직일이 2017년 9월 3일 이후인 직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칙(7)

(시행일) 이 요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8)

(시행일) 이 요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### 평균임금 산정서

- ① 퇴직일자: . . . .
- ② 임금산정기간(A): . . . . ~ . . . . ( 일)
- ③ 30일분의 평균임금 산정내역

1.급여(3개월)	퇴직일 전 3개월분 지급내역(B)		평균임금 (B/A)	30일분의 평균임금 (B/A)×30
기본연봉		원	원	원
직무연봉		원	원	원
정기상여금		원	원	원
시간외근무수당		원	원	원
<u>재년수당</u>		원	원	원
소계(E)				원
2.성과연봉 등(12개월)	퇴직일 전 12개월분 지급내역(C)	3개월분 (D=C×3/12)	평균임금 (D/A)	30일분의 평균임금 (D/A)×30
내부평가급	원	원	원	원
경평성과급	원	원	원	원
연차수당	원	원	원	원
소계(F)				원
합계(E+F)				원

- 임금산정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월의 퇴직일 해당일부터 퇴직전일까지를 기입함.  
(예: 2022.11.15 퇴직자의 임금산정기간은 2022.8.15~ 2022.11.14(92일)임.)
- 30일분의 평균임금 산정 시 원 미만 단수는 절사함.
- 30일분의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은 산정대상기간 중 지급된 총액이 아닌 급여항목별 산정대상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.  
다만, 퇴직 이후 급여소급분 발생 시에는 퇴직금을 재정산하지 않는다.
- 국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된다.